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용산선은 지난 70년 동안 화물수송 전용선으로서 마포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한 양화로 등 주요 간선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선 주변 주민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므로 용산선 및 경의선 복선전철은 주민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용산선을 14m 높이의 고가화로 설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면 지상에서 열차가 운행될 때 보다 진동에 의한 소음피해가 오히려 확산되고, 하루종일 햇빛을 한번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가구가 발생하며, 조망권마저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용산선은 반드시 완전 지하화 개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만약 화물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 경의선 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넷째, 그리고 용산선 폐지 후 지상철도 부지에는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하루 20만대 이상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개성 공단 및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의 교통망 연계로 경제적 가치상승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 중 마포구 연남동 일부 구간 지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용산역에서 가좌역까지 선로를 완전 지하화하여 연남동 인근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을 위해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한 기타 고가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수천억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후대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산선 고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으니 즉시 지하화로 변경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03. 2. 2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의원에게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

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중교통운임범위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9

2003년 2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2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3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의 경우 2000년 7월 이후 2년 반 동안의 요금동결로 시내버스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2002년도 노사협상 중재시 서울시가 요금조정 여부 검토방침 표명이후 실시한 운송원가 검증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버스업체들의 운송수지를 감안한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면서도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내버스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조정하고
      ○ 2000년 9월이후 운임이 동결된 지하철의 경우 운송원가의 56.6%에 불과한 운임수준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임범위를 조정하고자
      ○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대중교통 운임조정안)

시 내 버 스

(현금/교통카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비 고
도시형 (지역순환 포함)	일 반 인	600원/550원	700원/650원	16.7%/18.2%	카드할인액 종전유지
	중·고생 (회수권/카드)	450원/410원	550원/490원	22.2%/19.5%	일반인 대비 21%/25% 할인
	초등학생	250원/250원	300원/300원	20.0%/20.0%	일반인 대비 57%/54% 할인